

기술료 미납시 처리 방안

2010.03.30

(주)피앤아이비
조성만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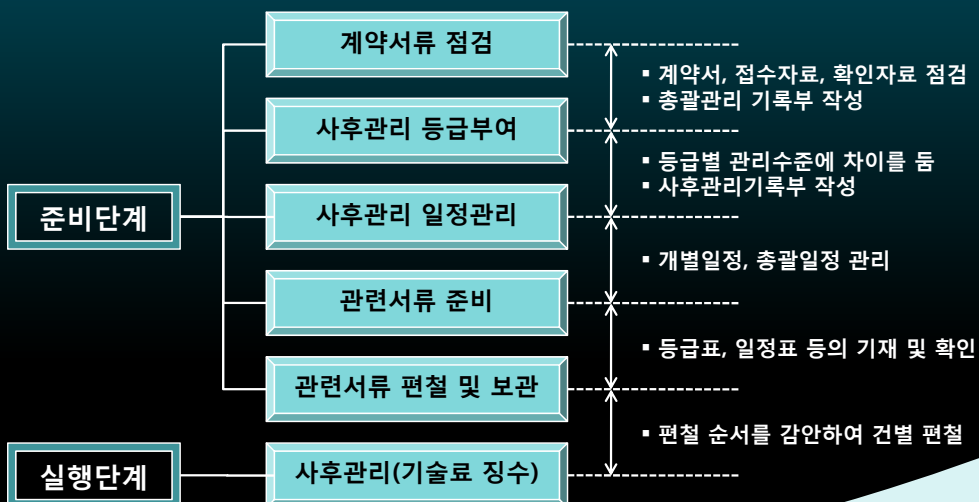
목차

1. 기술이전 사후관리 목적
2. 기술이전 사후관리 절차
3. 기술료징수 관리 프로세스
4. 기술료징수 부실 배경
5. 기술료징수 효율화 방안
6.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대응
7. 기술료징수 관리 사례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9. 기술료 관련 분쟁해결 절차

1. 기술이전 사후관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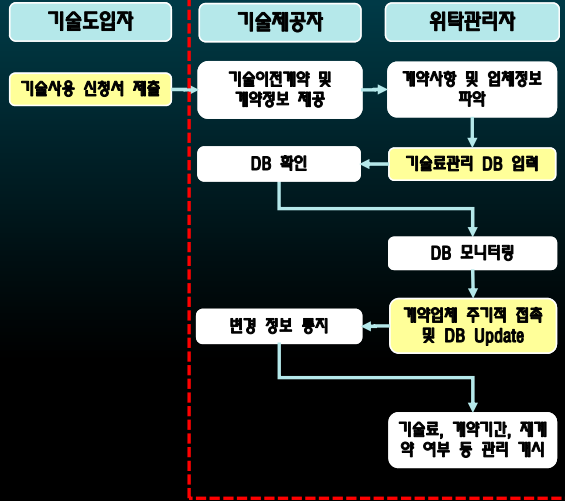
- **기술이전의 사후관리란?**
 - ⇒ 계약서 기명 날인 이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 업무
- **사후관리의 목적**
 - ⇒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조건의 이행 여부 등 계약관계의 유지 확인
 - ⇒ 다양한 부대조건, 중장기적인 계약조건의 감시 및 이행에 관한 문제 발생여지 차단
 - ⇒ 의무이행 촉구방안 및 절차 확보, 법적조치방안 강구방안 마련
- **사후관리에 있어서 고려사항**
 - ⇒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사후관리의 최소화
 - ⇒ 충실한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을 통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수행
 - ⇒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효율성 확보

2. 기술이전 사후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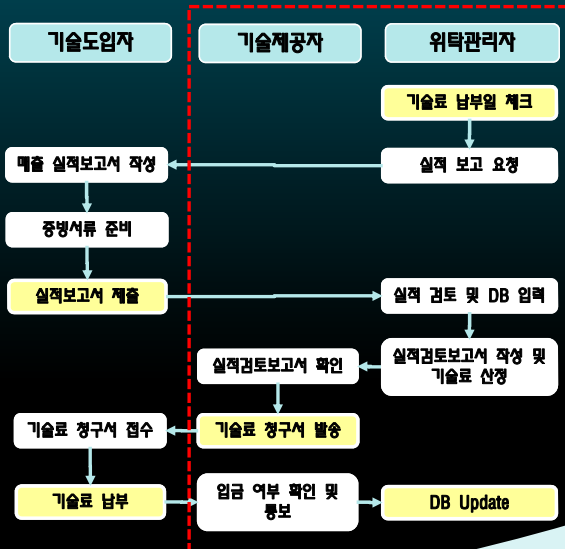
3. 기술료징수 관리 프로세스 (1)

DB 관리



3. 기술료징수 관리 프로세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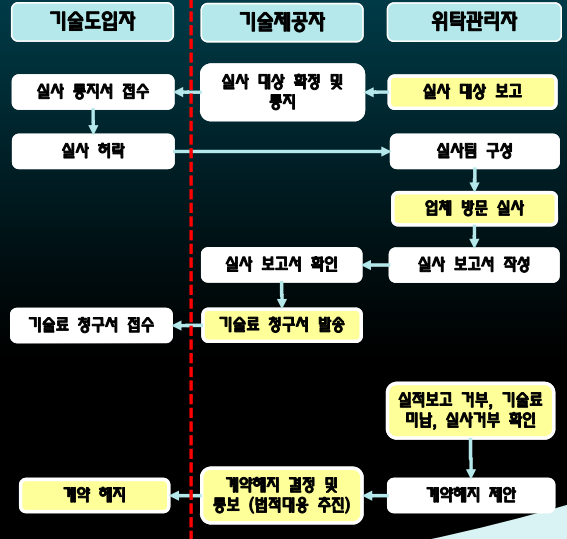
매출실적 분석



기술료 청구

3. 기술료징수 관리 프로세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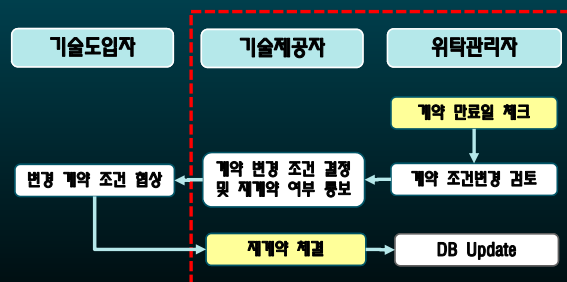
□ 실사



□ 계약 해지

3. 기술료징수 관리 프로세스 (4)

□ 재계약 관리



□ 관련 공문 및 양식 샘플 (첨부 참조)

- ① 경상기술료 납부기일도래 안내 공문샘플
- ② 매출 신고 보고서 샘플
- ③ 경상기술료 납부관련 매출액 확인 요청 공문샘플
- ④ 기술료납부 독촉 안내 공문샘플
- ⑤ 기술실시 계약해지 최고 공문샘플

4. 기술료징수 부실 배경 (1)

▪ 기술료 징수 관리 대상의 급격한 증가

- ⇒ 연구개발 패러다임에서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건수 증가
- ⇒ 고정기술료 방식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의 제도 개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의 계약 건수 증가
- ⇒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도 초기자금 투입에 따른 Risk 경감 차원에서 경상기술료 지급 방식의 계약 선호

▪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축적 미흡

- ⇒ 연간 상시업무라기 보다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전담인력 배치가 곤란
- ⇒ 계약직근무나 순환근무 등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동안만 기술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다 타부서로 이동에 따른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경험 미축적
- ⇒ 계약조건의 다양성

9/38

(주)피앤아이비

4. 기술료징수 부실 배경 (2)

▪ 시스템의 부재 및 사회적 공감대 미성숙

- ⇒ 발명자와 기술도입자 간 역학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없는 조직내 분위기 존재
- ⇒ 기술료 미납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미흡
- ⇒ 자체 계량화 곤란에 따른 과금의 어려움
- ⇒ 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실적 보고시 의도적 부실 보고에 대한 감사 시스템 가동의 어려움(비용, 시간, 인력 등)
- ⇒ 타인 기술, 특히 공공기술에 대한 성과 활용시 정당하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

▪ 대부분 중장기적 계약 이행

- ⇒ 계약이행이 수 년동안 중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진행됨으로 인해 관리업무의 누수현상 초래(연락처 변경, 담당자 교체 등)

10/38

(주)피앤아이비

5. 기술료징수 효율화 방안 (1)

- **업무의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 ⇒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적극적인 관리 이행**
 - ⇒ 기술료 납부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료 납부 의무를 상기시키려는 자세 및 강력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 **계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출**
 - ⇒ 기술료 징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성실 납부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로열티 요율을 감면시키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청구 또는 추가 기술이전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

11/38

(주)피앤아이비

5. 기술료징수 효율화 방안 (2)

- **충실한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 ⇒ 기술도입자의 법률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 기술료 미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조항 삽입 (손해배상금, 계약해지, 지연배상금 등)
 - ⇒ 계약이행의 강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 매출실현 성과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제하는 조항 삽입 (판매실적보고, 생산 및 매출관련 장부 비치, 장부 열람 등)
 - ⇒ 사업화를 촉구할 수 있는 조항 삽입 (계약 후 특정기간 이내 사업화 불가능시 계약해지, 특정기간 이후는 매출발생으로 간주 등)
 - ⇒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정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 삽입 (최저기술료 등)
 - ⇒ 손해배상시 손해배상의 기준제시 조항 삽입(손해배상 규모 선약정, 제3자 실시시 추산되는 금액 등)

12/38

(주)피앤아이비

6.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대응

▪ 기술료 미납 발생시 대응 순서

- ⇒ 기술료 납부 촉구 (선의적 대응) ☞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 ⇒ 기술료 납부 독촉 최고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 가능 기재)
- ⇒ 외부업체 활용 (채권 추심의뢰 - 단, 적법업체 활용에 유의)
- ⇒ 법적조치 실행 (소송 또는 중재)

▪ 법적조치 필요시 가능하면 중재 활용

- ⇒ 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 비밀유지 가능
- ⇒ 단, 분쟁발생시 중재로 해결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필요

▪ 독촉시 유의사항

- ⇒ 독촉서의 발송방법 - 서면 도달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 활용
- ⇒ 형법 및 특별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독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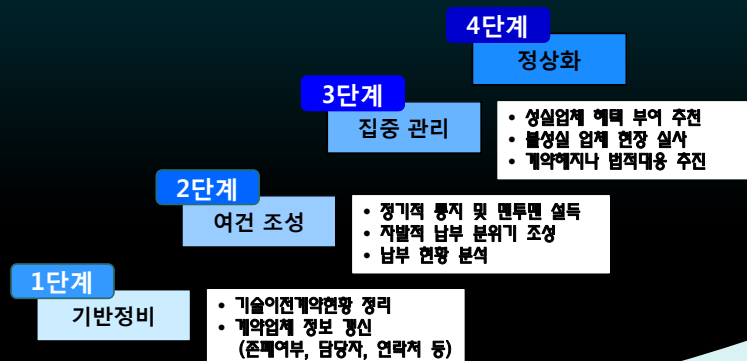
13/38

(주)피앤아이비

7. 기술료징수 관리 사례 (1)

▪ ○○사의 기술료 징수 관리

- ⇒ 기술이전계약 건 수 : 214건 (2009년 기준)
- ⇒ 관리 방법 : 자체관리에서 2006년 4월 이후 외부 위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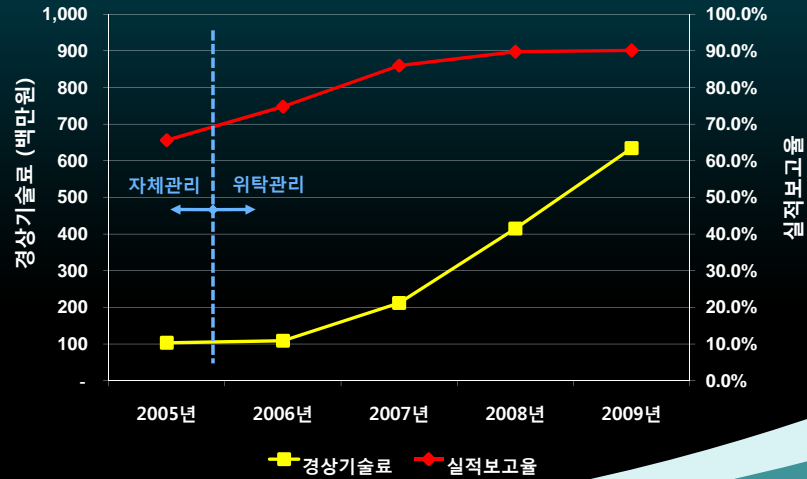


14/38

(주)피앤아이비

7. 기술료징수 관리 사례 (2)

○●사의 매출실적보고율 및 경상기술료 징수액 추이



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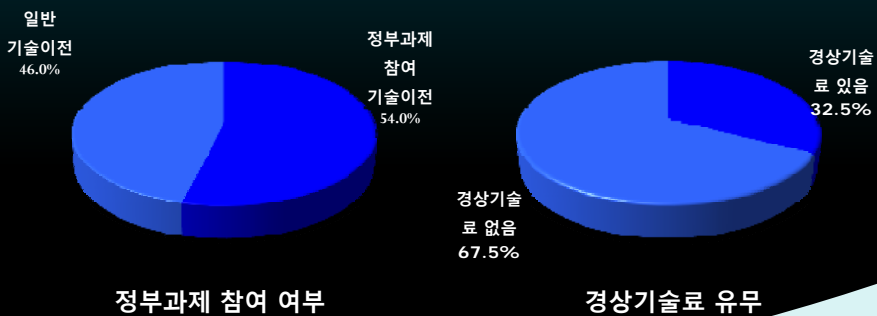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1)

○●기관의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약 건 수 : 126건 (3개년 계약분, 2009년 조사)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및 방문 면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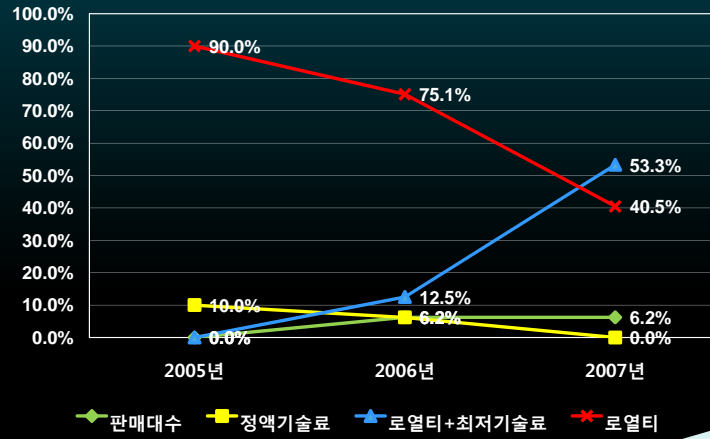


16/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2)

경상기술료 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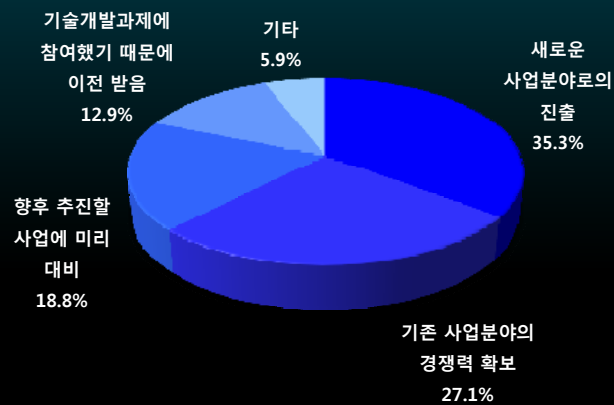


17/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3)

기술이전 동기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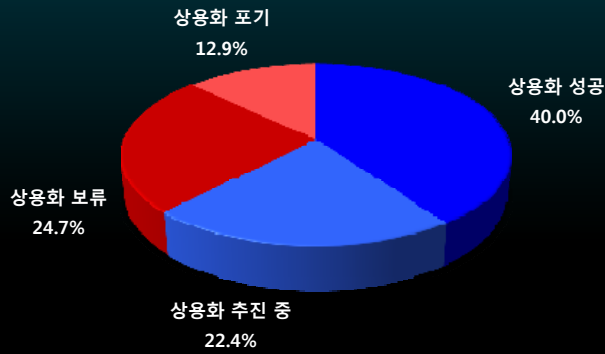


18/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4)

이전기술의 상용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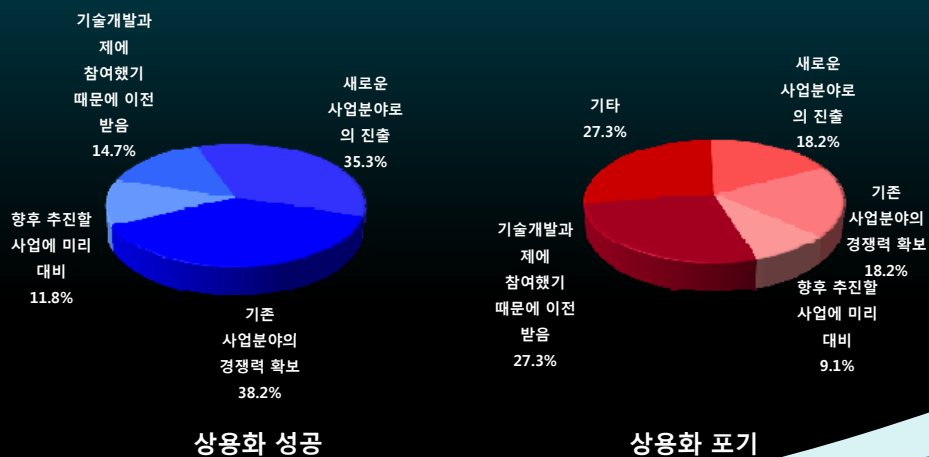


19/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5)

이전기술 상용화 여부와 기술이전 동기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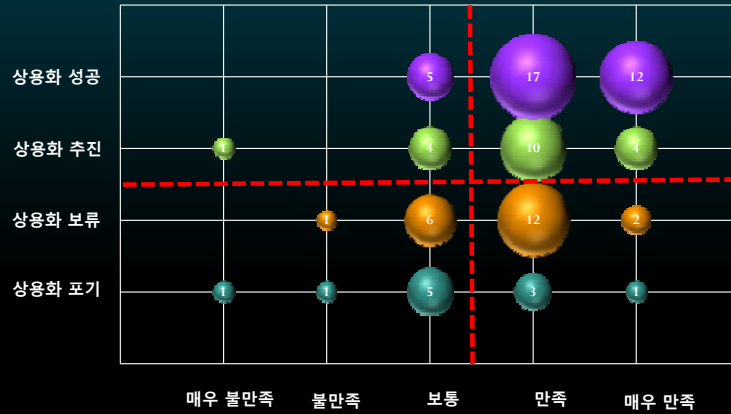


20/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6)

기술이전 만족도와 이전기술 상용화 여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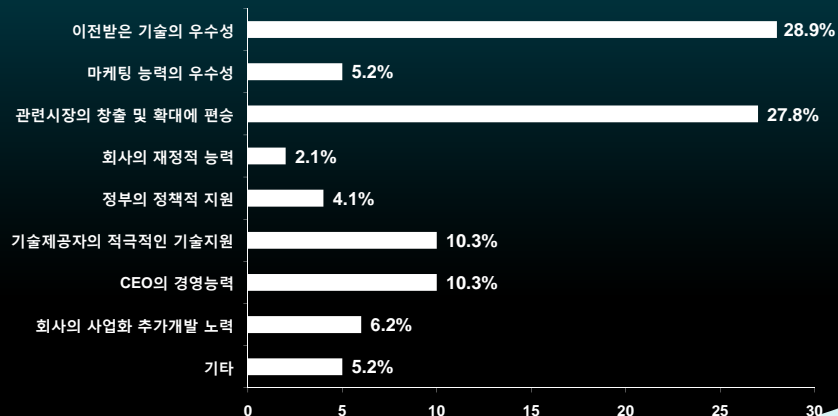


21/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7)

이전기술 상용화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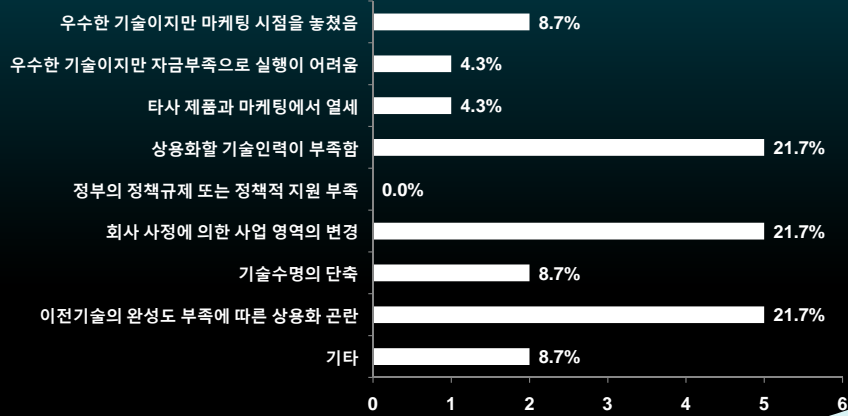


22/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8)

이전기술 상용화 포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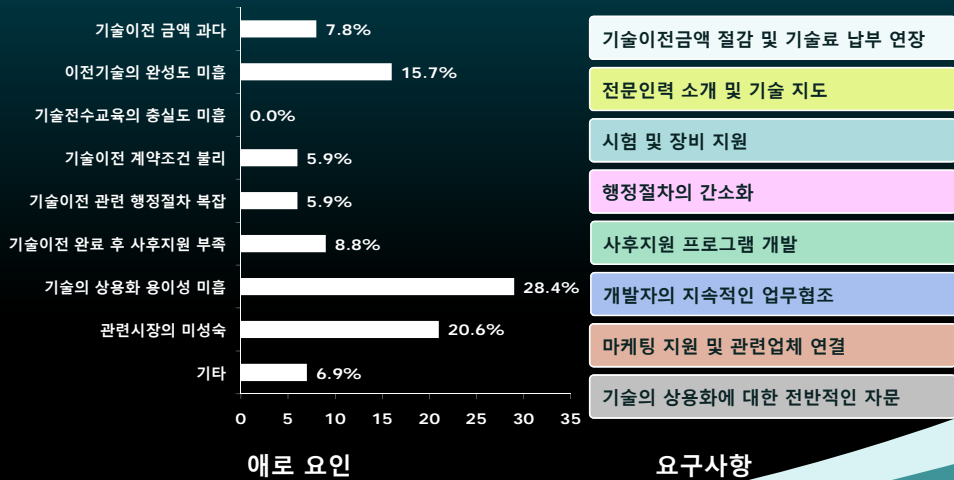


23/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9)

이전기술 상용화 애로요인 및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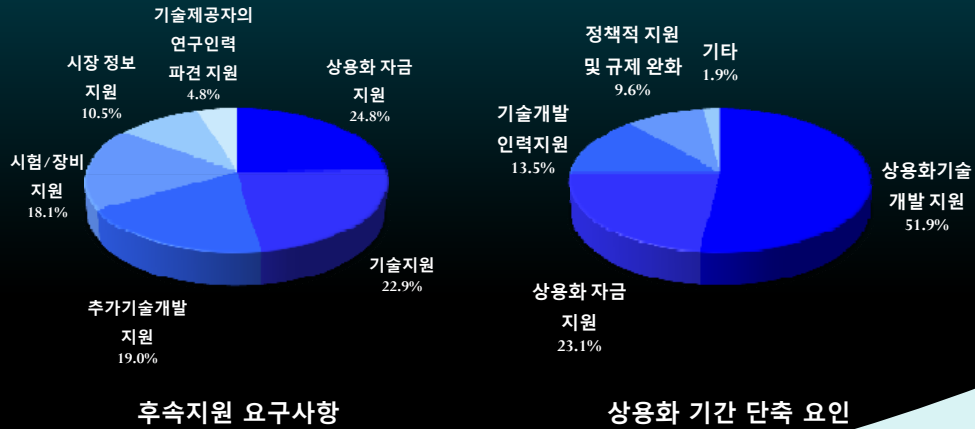


24/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10)

상용화 성공을 위한 후속지원 요구사항



25/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11)

기술료 지급약속에 대한 이행 수준 분석

- ⇒ 공증약속어음(4건) : 납부 이행 2건, 불이행 2건
- ⇒ 은행도약속어음(2건) : 납부 이행 2건, 불이행 없음
- ⇒ 은행지급보증서(1건) : 납부 이행 1건, 불이행 없음
- ⇒ 지급이행보증보험(3건) : 납부 이행 3건, 불이행 없음



해당 TLO에서 기술이전계약시 정액기술료 분납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증약속어음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 중

26/38

(주)피앤아이비

8.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례 (12)

▪ 추가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 확인

⇒ 실태조사 대상 중 21.7%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31건 기술에 대한 추가 수요 확인



해당 TLO에서 기술이전 마케팅 수행 중
(상용화 R&D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누락 경상기술료에 대한 추가징수 규모 확인

⇒ 실태조사 대상 중 11.3%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약 1억7천만원 이상의 경상기술료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해당 TLO에서 기술료 추가징수 검토 중
(기술료징수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1)

▪ 이행 촉구 등 : 내용증명 우편 이용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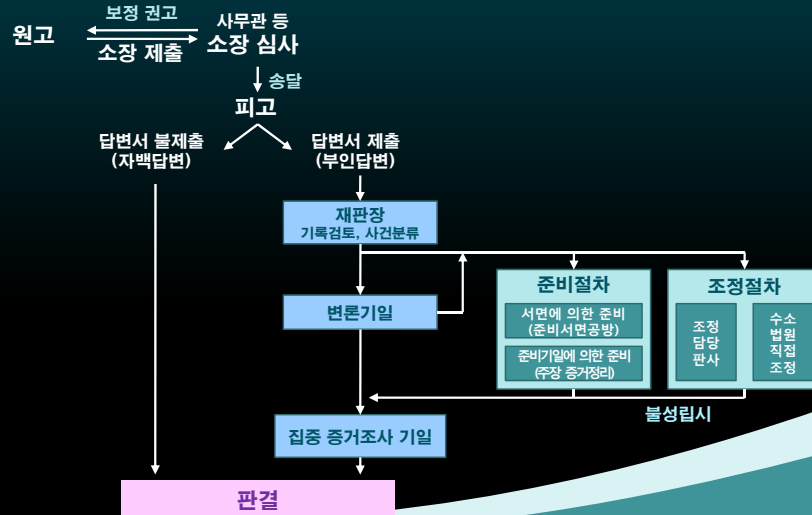
⇒ 계약이행 촉구나, 해지통보 등에 관한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

⇒ 작성 및 발송 요령 : (1) A4용지 한쪽 면만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2)내용 정정, 삽입, 삭제 등의 경우 그 글자수를 난외의 빈 부분에 기재하고 날인, (3)서두나 끝부분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 성명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 표기, (4)문서 3부[원본1부+등본2부 원칙, 등본만 3부도 가능]준비하되 문서가 2쪽 이상이면 간인필요, (5)수취인에게 보낼 문서(원본)는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 성명이 동일하게 기재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합하여 등기 접수

⇒ 유의사항: (1)내용증명은 단지 기재된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그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임, (2)필요 시 '배달증명' 이용 바람직함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2)

민사 소송 - 제1심 판결절차



29/38

(주)피앤아이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3)

민사소송 (1)

[제1심 판결절차]

-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
-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 제기하여야 하나(토지관할), 통상적으로 기술이전계약시 분쟁관할 합의(합의관할)
-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
- 민사재판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주 내외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 종결한 후 보통 2~3주 후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송달
- 민사판결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 갖지 않음.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가능



30/38

(주)피앤아이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4)

▪ 민사소송 (2)

[제2심 판결절차](항소심)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 가능
- 제2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제1심 재판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더 제출 가능
-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음

[제3심 판결절차](상고심)

- 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 가능
-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 다르게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cf.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 확정증명을 받거나, 확정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증명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



31/38

(주)피앤아이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5)

▪ 민사소송 (3)

[강제집행절차]

-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 실시
-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
- 경매·입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강제로 매각하여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 대금을 배당받는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금의 배당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음



32/38

(주)피앤아이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6)

▪ 민사소송 (4)

[가압류, 가처분 절차]

-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하는 절차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할 수 있음

cf. 채무명의(집행명의)란?

-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 기초가 됨.
-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됨
- 예컨대,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이 됨

33/38

(주)피앤아이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7)

▪ 중재(Arbitration)란?

-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벌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法院)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분쟁을 한번으로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
-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의 경우와 달리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의미)

cf. 중재합의

- 중재법 제8조 제3항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 중재합의의 서면주의 명문화
- 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 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34/38

(주)피앤아이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8)

▪ 중재 절차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중재신청서 제출 및 중재비용 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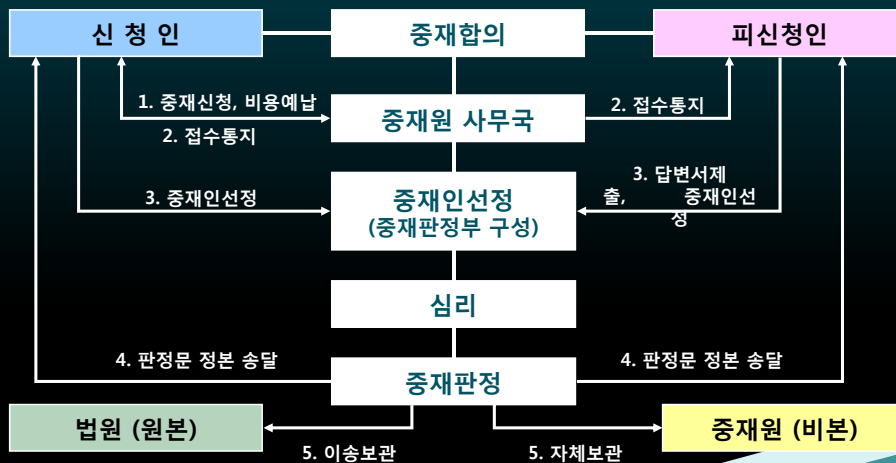
-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 선정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통상 3회 개최)

- 중재인의 중재판정
- 당사자 합의 시 화해판정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9)

▪ 중재 절차 진행과정도



9. 기술료관련 분쟁해결 절차 (10)

▪ 중재(仲裁) 특징점

-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처럼 항소/상고 불가, 최종적 판단으로서 구속력)
-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적으로 3년 내외의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국내중재 약5개월, 국제중재 약7개월 내외 소요
-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단기간에 종결되므로 비용 저렴
- 국제적인 인정: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체결국 간 상호승인, 강제집행 보장
-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제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있는 전문가가 사건검토 및 판정하도록 함
-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 또는 배척: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임 및 후보배척 권리부여
- 심리 비공개 : 당사자 허락없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심문과장 참여 불허, 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
- 부드러운 절차진행 :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당사자 변론기회 부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에 도움

37/38

(주)피앤아이비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주)피앤아이비

Tel : 02-593-3377

38/38

(주)피앤아이비

○○○ 대학교 산학협력단

(000-000) ○○시 ○○구 ○○동 0000번지 / TEL (02) 000-000 / FAX (02) 000-000
 성과확산실 성과확산팀장 ○○○ 담당자 ○○○ / univ@univ.ac.kr / www.univ.ac.kr

문서번호 TL0 000-000호
 시행일자 2010. 03. 30.
 (경유)
 수 신 : ○○기업(주) 대표이사
 경남 ○○시 ○○동 00-00
 (TEL : 055-000-0000)
 참 조 : ○○○ 팀장
 제 목 : 경상기술료 납부기일 도래 안내

선 결			지시	
접 수	일자	. . .	결 제	
	시간 번호	:		
	처리부서		공 람	
	담당자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우리 대학교산학협력단 간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경상기술료의 납부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표시된 항목을 기재하시고 첨부 매출신고 보고서와 함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매출실적에 대한 확인 및 경상기술료 산정이 완료되면 아래의 입금계좌로 경상기술료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술명	국문 : □□□ □□□□ 기술		
	영문 : ▽▽▽▽		
계약일	2006년 1월 5일	계약만료일	2010년 12월 31일
통지근거	기술이전계약 제○조 ○항		
대상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3월 31일		
매출액※	00백만원	통지기한	2010년 3월 30일
경상기술료율	대상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		
입금기한일	2010년 5월 31일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영업일로 연장)		
입금계좌번호	○○은행 123-45-678900 예금주 :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의사항	- 입금전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게 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입금기한 경과시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 ○%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오니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매출액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일정에 따라 입금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첨부 : 매출신고보고서 양식 1부.끝.

○○○ 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매출 신고 보고서

1. 매출신고기간 : 2010년 월 일 ~ 2010년 월 일
 2. 사용 기술명 : _____ (계약일 : 년 월 일)
 3. 매출발생내역 :

[VAT별도]

판매일	제품유형	판매수량	단가	매출액	판매처	납품유형	비고 (증빙번호)
총계							

상기 기술사용에 대한 매출 발생 내역을 성실히 신고합니다. (작성 공간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

- ※ 첨부 : 1) 납품계약서 사본 1부.
 2) 거래내역서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매출 실적없는 경우

- 1) 매출 미발생 사유 :
 2) 매출 발생 예상일 : 년 월

5. 실적보고자

- 1) 회사명 :
 2) 보고일 : 2010년 월 일
 3) 작성자
 - 부서명 : 직위 : 전화 :
 - 성 명 : (인)
 4) 확인자
 - 부서명 : 직위 : 전화 :
 - 성 명 : (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 대학교 산학협력단

(000-000) ○○시 ○○구 ○○동 0000번지 / TEL (02) 000-000 / FAX (02) 000-000
 성과확산실 성과확산팀장 ○○○ 담당자 ○○○ / univ@univ.ac.kr / www.univ.ac.kr

문서번호 TL0 000-000호
 시행일자 2010. 03. 30.
 (경유)
 수 신 : ○○기업(주) 대표이사
 경남 ○○시 ○○동 00-00
 (TEL : 055-000-0000)
 참 조 : ○○○ 팀장
 제 목 : 매출액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협
 조요청

선 결				지시	
접 수	일자	결 제 · 공 람		
	시간 번호	:			
	처리부서				
	담당자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우리 대학교산학협력단 간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귀 사에서 신고한 매출액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귀 사를 방문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술명	국문 : □□□ □□□□ 기술		
	영문 : ▽▽▽▽▽		
계약일	2006년 1월 5일	계약만료일	2010년 12월 31일
통지근거	기술이전계약서 제○조 ○항		
방문예정일	2010년 3월 30일 오전 10시 (※방문일정 변경 필요시 사전 협의 요망)		
방 문 자	총 2인 (○○대학교산학협력단 ○○○, 공인회계사 ○○○)		
준비자료	-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총계정원장, 손익계정원장 - 현금출납장을 비롯한 보조원장 - 거래처현황, 매출매입장,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주의사항	- 확인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현장 확인결과 귀사에서 제시한 매출액 (순이익)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보고내용과 검사결과가 5% 이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끝 .

○○○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대학교 산학협력단

(000-000) ○○시 ○○구 ○○동 0000번지 / TEL (02) 000-000 / FAX (02) 000-000
 성과확산실 성과확산팀장 ○○○ 담당자 ○○○ / univ@univ.ac.kr / www.univ.ac.kr

문서번호 TL0 000-000호
 시행일자 2010. 03. 30.
 (경유)
 수 신 : ○○기업(주) 대표이사
 경남 ○○시 ○○동 00-00
 (TEL : 055-000-0000)
 참 조 : ○○○ 팀장
 제 목 : 경상기술료 납부 독촉

선 결				지시	
접 수	일자	. . .	결 제 ·	공 람	
	시간 번호	:			
처리부서					
담당자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우리 대학교산학협력단 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의 경상기술료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해당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독촉합니다.
 3. 아울러 아래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상기술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기술명	국문 : □□□ □□□□ 기술		
	영문 : ▽▽▽▽		
계약일	2006년 1월 5일	계약만료일	2010년 12월 31일
통지근거	기술이전계약 제○조 ○항		
대상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3월 31일		
경상기술료	○○백만원	연체일	○일
연체이자	○만원	납부총금액	○○백만원
납부기한일	2010년 5월 31일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영업일로 연장)		
입금계좌번호	○○은행 123-45-678900 예금주 :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의사항	- 납부기한 경과시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 ○%의 연체이자율이 추가 적용되오니 기한 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상기술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끝 .

○○○ 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대학교 산학협력단

(000-000) ○○시 ○○구 ○○동 0000번지 / TEL (02) 000-000 / FAX (02) 000-000
 성과확산실 성과확산팀장 ○○○ 담당자 ○○○ / univ@univ.ac.kr / www.univ.ac.kr

문서번호 TL0 000-000호
 시행일자 2010. 03. 30.
 (경유)
 수 신 : ○○기업(주) 대표이사
 경남 ○○시 ○○동 00-00
 (TEL : 055-000-0000)
 참 조 : ○○○ 팀장
 제 목 : 기술이전계약 해지 최고

선 결			지시	
접 수	일자	. . .	결 제	
	시간 번호	:		
처리부서			공 람	
담당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우리 대학교산학협력단 간 아래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 사의 계약 의무사항 불이행이 지속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최고합니다.
3. 본 계약해지 최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유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최고가 확정됨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체결 내용

기술명	□□□ □□□□ 기술		
계약일	2006년 1월 5일	계약만료일	2010년 12월 31일
통지근거	기술이전계약서 제○조 ○항		
연구책임자	□□□연구실 ○○○ 교수		
실시기업	(주)○○기업		
실시 조건	실시기간	200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기술료 (지급방법)	- 선금금 : 40,000천원(현금) -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	

나. 계약 해지 사유

- 1) 경상기술료 지급 불이행
- 2) 이전기술 미활용 및 상품화 지연

다. 계약 해지일 : 2010년 4월 30일

라. 후속조치

- 1) 귀 사는 계약해지일 이후 본 계약기술을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특허침해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 2) 귀 사는 타인에게 본 계약기술이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끝.

○○○ 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통 지 문

수신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00
(주)○○○
대표이사 ○○○ 귀하

발신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000
○○○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

제 목 : 기술사용 계약해지 통보

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사는 지난 2005년 3월 31일자로 본 발신인과 “○○○ ○○○(이하, 간단히 ‘본 기술’ 이라고 함)”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기술이전계약서(이하, 간단히 ‘본 계약서’ 이라고 함)” 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본 계약서’ 제9조(판매수입의 증빙자료 제출) 1항에 의하면, 귀 사는 익년도 3월말까지 ‘본 기술’ 을 이용한 제품의 연간 판매수입을 증빙하는 기술료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본 발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3항에 의하면, 판매수입에 대한 증빙제출 자료는 매출의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까지 귀 사로부터 아무런 실적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본 통지문을 송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발신인은 그 동안 귀 사와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계약이행을 완성하고자 ‘본 계약서’ 제17조 1항 4목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전화통화를 통해 실적보고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귀 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판단됩니다.

5. 그러나 앞으로도 귀 사의 계약이행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상호 간 계약체결의 순수하고 정당한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며, 본 발신인의 기술 보호 노력과 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계획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계약이행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서’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그 동안 미이행된 계약 준수사항을 2010년 4월 15일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기한까지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귀 사에서는 더 이상 ‘본 기술’의 통상실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4월 30일자로 본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만일 해지일 이후에 귀 사가 ‘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발신인은 귀 사과 우호적인 입장에서 본 계약을 추진하였고 그 동안 계약이행을 기다려왔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시어,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불미스러운 분위기로 반전되지 않도록 귀 사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30일

담당자 : ○○○ 대학교산학협력단 성과확산팀 ○○○
[전화번호: 02-000-0000]

중재신청서

1. 당사자

가. 신청인

상 호 :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 ○○시 ○○구 ○○동 ○○

단 장 : ○○○

위대리인 : (직원이 담당 시 직원 성명, 변호사 있는 경우 변호사)

주 소 : ○○시 ○○구 ○○동 ○○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재합니다)

상 호 : 주식회사 ○○산업

주 소 :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설명

- ❖ 중재신청시에는 누가 당사자인지 확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추후 중재판정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 회사의 경우 사장 성명<예: 홍길동(가나다 실업의 대표)>을 기재합니다.
- ❖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고, 연락도 대리인에게 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중재신청의 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 (대금지급하여야 할 다음날 기재)로부터 중재신청의 송달일까지는 연 6%, 중재신청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에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설명

- ❖ 신청취지는 자신이 원하는 최종 결론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판정대상, 중재비용, 강제집행 기준 등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 ❖ 신청취지에는 보통 ①지급을 구하는 금액, ②이에 대한 이자, ③ 중재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①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대금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지연이자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이자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예: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6% 지연이자 규정).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자 6%, 또는 민사법정이자 5%를 기재합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특례법에 의해 인정되는 이자입니다.
- ❖ 중재비용은 보통 신청인이 100% 승소한 경우 피신청인이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0% 패소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토록 결정합니다.

3. 중재신청의 이유

- (1) 신청인은 ○○시 ○○구에서 연구개발서비스를 주로 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고, 피신청인은 ○○시 ○○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년 ○월 ○일자로 피신청인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신청인의 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기술이전계약서 참조)
- (3) 이 계약에서 기술료는 선금금으로 금○○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토록 하고, 차년도부터 5년간 매년 최저기술료로 금○○원을 매년 ○월 ○일까지 지급토록 약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계약 기술료 중 선금 금○○원을 ○○년 ○월 ○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 (4) 동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 기술에 대한 이전을 ○○년 ○월 ○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참조)
- (5) 그런데,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최저 기술료 1차년도분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6) 신청인은 동 최저기술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급토록 구두로 요청하기도 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었으나(갑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피신청인은 명확한 답변 없이 차일피일 최저기술료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동 최저기술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기술이전계약서 제○조의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7) 아울러, 동 계약서 제○조에서는 피신청인이 기술료 지급을 지연할 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8)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중 미지급된

최저기술료 1차년도분 금○○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
귀원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 설명

- ❖ 신청이유는 왜 중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청의 근거 등 구하고자 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도록 논리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신청이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다툼이 되는 사항이 많지 않은 경우 보통 ① 당사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②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 ③ 계약의 진행경과, ④ 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 ⑤ 그 원인의 책임, ⑥ 결론 등의 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구하고자 하는 신청이나 다툼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나, 원인별로 구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중재판정부는 개략적인 계약내용을 파악한 후에 직접 다툼이 되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여 중재판정을 내리게 되고, 2차 심리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증거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4. 입증방법

갑제1호증 기술이전계약서
갑제2호증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갑제3호증 내용증명

※ 설명

- ❖ 입증방법의 표시 갑제1호증에서 ‘갑’은 신청인이 제출하였다는 말이고(피신청인 제출할 때는 ‘을’로 표시), ‘제1호증’은 일련번호로 증거 1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다음에 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갑제4호증부터 순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 ❖ 입증방법은 신청이유 등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말합니다.
- ❖ 입증방법으로는 계약서(및 부속자료), 사진 등 자료, 증인, 서신 등 자료가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 제출 시 추가 구비서류

(1)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 ❖ 기술이전계약서상 분쟁관할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기술이전계약서상의 분쟁관할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별도로 ‘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된 **중재합의서를 작성하면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 중재당사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대리인 위임장

- ❖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표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4) 소정의 중재비용

- ❖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예납하며, 중재판정시 부담자가 결정됩니다.

중재판정사례

기술 이전료 등 보수지급 청구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기업	
피신청인	대한기업	
청구원인	기술 이전료 등 보수지급 청구	
품 목	철강, 금속	
신청금액	3,607,800,000원	중재비용 : 24,939,400원
신청일	2003. 12. 01	
판정일	2004. 10. 12	
처리기한	317일	
판정금액	590,000,000원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0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2.부터 이 사건 중재 신청일까지는 연 6%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중재합의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03년 11월 체결된 중재합의서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1) 이집트 소재 000와 피신청인 신청외 △△△ 간 Know-How Transfer for Special Steel Plant계약(계약번호 1/96-2, 이하 ‘노우하우 이전계약’), (2) 000와 피신청인 사이에 Plant Operation & Maintenance Management계약[계약번호 1/96-3, 이하 ‘위탁경영계약’], (3) 피신청인과 △△△사이의 컨소시엄 내부합의서(1996. 12. 27.자, 이하 ‘컨소시엄 내부 합의서’)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000 Project협정서(1997. 11. 12.) 및 이 (4) 위 계약의 이행 및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본건 중재는 서울에 소재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중재합의에 따라 당해 중재판정부가 이를 심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심리과정에 제출된 제반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 △△△ 및 신청외 ■■■는 000가 발주한 Special Steel Plant 사업(이하 ‘본건 프로젝트’)을 수행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

나. 위 컨소시엄 혹은 그 구성원들은 본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1996. 1. 13. 000와 주계약(Main Contract)을 체결하고, 이어 컨소시엄을 대표한 피신청인이 000와 설비공급계약을, 피신청인 △△△가 000와 노우하우이전계약을, 피신청인이 000와 위탁경영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다. 피신청인과 △△△는 1996. 12. 27.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에 관한 컨소시엄 내부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7. 11. 12.자로 000와 Project협정서를 체결하여, △△△가 위 노우하우이전계약 및 컨소시엄 내부합의서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신청인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인 2000. 6. 12.경 000와 노우하우이전계약 및 위탁경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노우하우이전계약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함)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노우하우이전계약 제3조에 따른 Technical Assistance, 제4조에 따른 노우하우 제공의무, 제6조에 규정된 Training 및 제7조에 규정된 Supervisor 파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000로부터 노우하우 이전계약 제8.3.1조 및 Table 4, 제8.3.2조 및 Table 5 등에 따라 (i) 3차분 기술이전료 미화 120만달러, (ii) 4차분 기술이전료 미화 60만달러, (iii) 5차분 기술이전료 미화 30만달러, (iv) 위탁훈련비 미화 34만달러 및 (v) 슈퍼바이저 파견비 미화 56만달러, 포함 미화 300만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컨소시엄의 리더이며 Main Contract상 피신청인이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없이 위 노우하우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000와 합의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000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미화 300만달러의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i) 신청인이 000에 대하여 기술이전료 등의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 노우하우 이전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위 노우하우 이전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ii) 피신청인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노우하우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당시까지 본건 프로젝트의 진행경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 그리고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 끝에 이 사건 합의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신청인과 체결한 컨소시엄 합의서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으며, (iii) 이 사건 합의해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신청인이 위탁경영계약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이라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노우하우이전계약상 신청인의 기술이전료 등 보수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 (1)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제반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청인이 노우하우이전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노우하우 문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은 피신청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노우하우이전계약에 따라 노우하우 문서의 제공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신청인은 이에 더하여 5차분, 기술이전과 위탁훈련 및 수퍼바이저 파견의무에 따른 보수 지급청구권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노우하우 문서가 노우하우이전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노우하우이전계약, 노우하우 문서 및 관련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하건대, 신청인이 제공한 노우하우 문서가 노우하우이전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000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노우하우 문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3)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000로부터 노우하우 문서이전과 상관관계에 있는 3차분 기술이전료와 4차분 기술이전료의 보수 미화 180만달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합의 해지의 적법성 여부

- (1)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본건 노우하우이전계약을 임의 해지하기로 000와 합의한 것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본 컨소시엄의 리더이므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컨소시엄의 리더로서 피신청인이 어떠한 행위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로인하여 컨소시엄 구성원이 권리를 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컨소시엄 합의서 제10조에 의하면 용역의 중지나 변경을 할 경우 피신청인이 이를 중지 혹은 변경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더욱이 용역비 변동의 경우 동 계약서의 단가에 의하나, 동 내역 단가에 준하기 곤란할 경우 양사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항 취지에 따른다면 기 발생된 용역비의 포기 등이 수반되는 용역의 중단 내지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합의서의 당사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나아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합의 해지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신청인과 위탁경영계약 및 노우하우이전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상의하였고, 노우하우이전계약을 해지한다는 원칙에 상호 공감한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 합의조건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전 동의없이 본건 노우하우이전계약을 임의 해지한 것은 컨소시엄 합의서 위반 내지는 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 (1) 본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노우하우이전계약 이행과정에서 000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노우하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위탁경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신청인 내지는 000에게 원만한 협조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그러한 사실이 000로 하여금 노우하우이전계약 및 위탁경영계약을 해지하기

로 결심하게 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합의 해지를 위하여 000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노우하우이전계약상에 의무를 이행하고도 기술이전료 미화 180만달러를 지급받지 못한 데에는 신청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35%에 해당하는 미화 63만달러에 대하여는 이를 과실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본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는 바에 의하면, 신청인과 000간에는 신청인이 제공한 노우하우가 노우하우이전계약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노우하우이전계약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미지급된 기술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우하우이전계약 제19조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ICC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제기해야만 했을 것인 바, 그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 비용, 변호사 비용, 해외출장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000가 아닌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본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000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지출하였을 비용은 이를 손익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건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사건의 ICC 중재비용으로 미화 650만달러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이 000를 상대로 파리에 ICC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를 신청할 경우 설사 승소하더라도 최소한 그 10분의 1정도인 미화 65만달러 정도는 중재신청 비용, 변호사 보수 및 출장비 등으로 소요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금액 역시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52만달러 {180만달러 - 63만달러(과실상계분) - 65만달러(손익상계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중재판정일 현재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기준환율인 미화 1달러 당 1,146원을 곱한 금액인 한화 금 590,000,000(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백만원 이하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중재판정 익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 익일인 2004.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중재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본건 프로젝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6분하여 그 5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재판정사례(2)

사건번호 : 000000
사건제목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농산물

<사건요약>

1.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교역이라는 상호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당통 팔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 생산,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지도하에 중국내 당통팔을 생산하고 신청인은 연 1,200톤을 기본으로 합격품전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요자에게 오퍼를 주어 수입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한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3년간 판매권을 부여하였고,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량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중국내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한국내에 중재외 S푸드를 설립하는 한편 중국내에서는 신청인은 외국측투자자로 하고 피신청인을 중국측 투자자로 하여 OO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공사는 피신청인과같은 장소에서 그 대표자가 중재외 S씨가 겸임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S푸드 소속대표이사 및 직원들을 OO공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제공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생산설비도면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은 중국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생산설비를 제작·설치하도록 지원하였다. 위 OO공사는 당통팔을 생산하여 한국에 공급을 개시하였고 실제수입업무는 S푸드가 수행하였다. 위 S푸드는 실수요자인 중재외 R회사에게 수입오퍼를 주어 수입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은 중재외 SR식품에게 신청인이나 S푸드의 관여 없이 직접 수출·판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OO공사는 비록 형식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처럼 활동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OO공

- 사의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먼저 S푸드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공사에 제공한 기술지도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기술료 지급 의무가 없고, 실수요자에게 수입권한을 위임하여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 건 에서 볼 때 신청인이 R회사에 오퍼 판매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지도료 지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기술지도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인 아닌 기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술 지도가 완료되자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된 기술지도료만이라도 받아내어 손해보전하고자 한다고 하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함은 별론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중재외 S푸드 소속기술자들이 피신청인들의 기술지도 위해 중국출장항공료를 청구하나, 이의 지급의무도 신청인이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물량의 수입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청구부분도 이유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 및 제3국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당통팔을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187톤을 SR식품을 직접 판매한 행위는 본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의 범위는 당통팔 187톤에 대한 판매수수료라고 할 것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R회사에 수입판매함으로써 받은 판매 수수료가 1톤당50달러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미화 9,350달러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피신청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미화 9,35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주문과 같다.

<판정문 전문>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9,3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4등분하여 그 3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42,864달러 및 이에 대한 2000. 8. 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인정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서증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은 1999. 8. 18. 자신이 운영하는 ‘H 교역’이라는 상호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당통팔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 생산,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합동서)(이하 “위 계약서” 또는 “본건 계약서”라 함)를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합동서). (2) 위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지도하에 중국내에서 당통팔을 생산하고 신청인은 연 1,200톤을 기준으로 합격품 전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신청인이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오퍼(offer)를 주어 수입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제3항).

- ① 오퍼가격 등 제반조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신청인은 기술자의 기술지도료로서 (중국에서의)체류기간 동안 일당 미화 100불로 산정한 금액을 기술지도가 끝나는 시점에 기술자에게 현지에서 지급한다. ③ 피신청인은 기술자 초청시 왕복비행기요금 및 중국체류시 숙식비 일체를 부담한다. ④ 실수요자의 제품수입후 발생한 클레임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신청인이 변상한다. (3) 한편 피신청인은 위 계약서 제10조에 의하여 한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3년간 판매권을 부여하였고(제1항),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량을 우선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잔여 생산여력의 물량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중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그 후 신청인은 위 계약에 정한 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1999. 12. 24. 중재외 C씨 등 팔가공 기술자들과 함께 한국내에 중재외 S푸드(주)를 설립하는 한편, 중국내에서는 이른바 중외합자회사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 및 기타 지원을 받기 위하여 1999. 11. 10. 신청인을 외국측 투자자로 하고 피신청인을 중국측 투자자로 한 중재외 ○○공사를 설립하였다(을 제5호증). 위 ○○공사는 피신청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도 중재외 S씨가 겸임하고 있다(을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위 을제5호증, 갑제6호증 사진 등). (5) 신청인은 본건 계약서에 따라 1999. 10. 9.부터 2000. 8. 4.까지의 사이에 위 S푸드(주) 소속 C씨등을 수시로 위 ○○공사에 파견하여 당통팔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였다 (6) 또한 위 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당통팔의 생산설비 도면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은 중국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생산설비를 제작설치하도록 지원하였다. (7) 위 ○○공사는 이러한 신청인과 S푸드(주)의 지원하에 당통팔을 생산하여 한국에 공급을 개시하였고, 한국에서의 실제 수입업무는 S푸드(주)가 수행하였다. 위 S푸드(주)는 2000. 6.경 실수요자인 중재외 R회사에게 수입오퍼를 주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당통팔 276톤을 수입하도록 한 바 있으나, 2000. 5. 및 6.에 걸쳐 피신청인은 중재외 SR식품에게 당통팔 187톤을 신청인이나 S푸드(주)의 관여없이 직접 수출판매하였다.

2.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과 ‘○○공사’와의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공사’는 비록 형식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긴 하나, 위 ‘○○공사’는 본건 계약서에서 피신청인이 수행하기로 한 당통팔의 생산·공급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처럼 활동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또한 갑 제10호증(서신)에 의하여 위 ‘○○공사’가 본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계약상 의무를 피신청인 대신 수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신청인은 위 갑 제10호증의 증거능력을 다투나 동 서증의 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건 계약서에 의한 당통팔의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하여 위 ‘○○공사’가 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직접 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공사’에게 한 행위는 피신청인에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공사’의 행위에 대하여 본건 계약서

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술지도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신청인은 먼저 S푸드(주)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공사’에게 제공한 기술지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기술지도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 기술자들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한 상대방이 ‘○○공사’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본건 계약서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 계약서상 피신청인에게 기술지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려면 먼저 동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수입권한을 위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본건 계약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수요자에 의한 수입물량이 어느 정도이어야 기술지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계약 및 거래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서 신청인측의 기술지도는 피신청인의 제품생산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매 수입건별로 기술지도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기술료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수입권한을 위임하여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기술지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기술지도료 지급의무는 신청인이 본건 계약기간에 걸쳐 수입되는 제품전량의 수입권한을 모두 실수요자에게 위임하거나,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상당한 물량을 실수요자로 하여금 직접 수입하도록 위임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서는 사업초년도인 2000년에 신청인이 L회사에게 당통팔 276톤을 오퍼판매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임이 인정되는 바, 이 정도의 수입위임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술지도료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기술지도료를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신청인에게 기술지도료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는 그 기술지도료를 당해 ‘기술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계약서 제11조에서도 신청인에 의한 직접수입시 이익배분을 받을 당사자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별도로 ‘기술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익배분을 통해 기술지도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인이 아닌 기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본건에서 당해 기술자들 또는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재외 S푸드(주)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술지도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술지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술지도가 거의 완료되자 피신청인이 이젠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지도료만이라도 받아내어 손해를 보전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약파기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기하여 기술지도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술지도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 다. 중국출장항공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은 중재외 S푸드(주) 소속 기술자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중국출장항공료의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기술지도료와 마찬가지로 본건 항공료의 지급의무도 본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물량의 수입위임을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위 나.항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항공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수입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중국 출장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부분도 이유 없다.
- 라. 독점판매권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지도하에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당통팔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본건 당통팔의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그 대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특히 한국 및 제3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자신이 생산한 당통팔 187톤을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중재외 SR식품(주)에게 직접 판매한 행위는 신청인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본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만약 피신청인이 본건 계약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통하여 SR식품(주)에 본건 당통팔 187톤을 수출하였다면 신청인은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액은 이와 같은 판매수수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SR식품(주)에 대한 판매시기와 거의 동일한 2000. 6.

경 S푸드(주)가 R회사에 본건 제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수입 당통팔 1톤당 미화 50달러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미화 9,350달러 (187MT×미화 50달러)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 론

위와 같은 제반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미화 9,350달러와 이에 대하여 중재신청서 부분의 송달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본 건 분쟁의 내용 및 경위를 참작하여 중재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